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능정보화사회 시대에 문화유산 향유 방식이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형콘텐츠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유산 분야의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적극적인 보급 활성화와 규율 마련이 필요하여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관련 내용을 담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9951호, 2024. 1. 9. 공포, 2024. 5. 17. 시행)됨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및 제작·개발의 지원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2024. 2. 20. ~ 4. 1.) 실시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12부터 제10조의1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목록 중에서 그 이용 활성화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의15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권리자는 기증, 공유·공동이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공 또는 매도의 허락여부를 통보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공유·공동이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공을 허락 통보한 권리자에게 기증·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의 지원) ①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 관련 학부·학과가 설치된

대학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텐츠의 제작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전문인력 현황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3. 시행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

활성화의 가치성 여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 금액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공유·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원본 및 복제물 각 1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정보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7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관리 및 이용·활용 촉진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누구든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관리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0제2항에 따라 연계·제공하는 소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복제 등) ① 법 제22조의21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2조의22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으로부터 복제 또는 출력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 운영업무의 위탁)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진흥원에 위탁한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12(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수집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15제1항에 따라 제출된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목록 중에서 그 이용 활성화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u> <u>② 법 제22조의15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권리자는 기증, 공유·공동이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공 또는 매도의 허락 여부를 통보한다.</u> <u>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공유·공동이용을 위한 복제물의 제공을 허락 통보한 권리자에게 기증·이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u>
<u><신 설></u>	<u>제10조의13(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개발의 지원) ① 법</u>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
하는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
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
작 또는 개발 관련 학부·학
과가 설치된 대학

2.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
작 또는 개발과 관련된 업무
를 수행하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디지털콘텐츠 및 같은 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멀티미디어콘
텐츠의 제작자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개
발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 법
인 또는 단체

② 법 제22조의16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대학·법인 또
는 단체 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
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계획서

2. 최근 3년간의 문화유산디지
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장비 및 기술 보유 현황

4.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제작 또는 개발 전문인력 현황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을 수행할 인력과 기술의 적정성 여부

2. 다른 기관이 시행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3. 시행할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이용 활성화의 가치성 여부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때에는 해당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 설>

1.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의 과제 및 책임자

2. 지원 금액

3.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성과물의 공유·공동이용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대학·법인 또는 단체 등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작 또는 개발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원본 및 복제물 각 1부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의14(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공공정보 이용 촉진) ① 국가유산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의17제2항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이 공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

<신 설>

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1. 정보의 제공 범위

2. 정보의 제공 형태

3. 정보 이용료 또는 수수료

4. 정보 가공 및 사용의 범위

5. 정보의 갱신일시

6. 정보의 이용 기준 및 신청절차

7.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공공정보의 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정보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 17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제작·개발하는 대학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공공정보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15(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구축·관리 및 이용

· 활용촉진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누구든지 법 제22조의20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에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구축·관리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의20제2항에 따라 연계·제공하는 소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를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의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와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 기관장은 제2항에 따른 소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중단일 3개월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플랫폼을 통하여 제공되는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신 설>

<신 설>

에 대하여 이용자 방문기록·제
공현황 및 검색어 분석과 설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16(문화유산디지털콘텐
츠의 복제 등) ① 법 제22조의2
1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수수료를 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가
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22조의22에 따라 문화유산디
지털콘텐츠플랫폼의 운영 업무
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문화유산디
지털콘텐츠플랫폼으로부터 복
제 또는 출력한 문화유산디지털
콘텐츠의 활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에 활용하는 경우
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
으로 활용하는 경우

제10조의17(문화유산디지털콘텐
츠플랫폼 운영업무의 위탁) 국
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의22제

1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0제1항
에 따른 문화유산디지털콘텐츠
플랫폼의 운영 업무를 「국가유
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진
흥원에 위탁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재청 법무감사담당관	
연 락 처	(042) 481 - 4789